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정숙 소유물건(2025타경30795)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서번호: gc01-2504-0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관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 덕 관

감정평가액	일억이천사백육만이천오백칠십원정(₩124,062,570.-)		
-------	----------------------------------	--	--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흥덕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정숙 (2025타경3079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30	2025.04.29 ~ 2025.04.30	2025.05.02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36	토지	136	-	112,744,000
	건물	87.11	건물	87.11	-	7,578,570
제시외건물	75.80	건물	75.80	-	3,740,000	
합계					₩124,062,5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06-3	대		136	136	829,000 * 제시외 감안한	112,744,000 건물 등이 미철 감정평가액	영향을 ₩100,000,000
2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06-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95번길 8-11 위치상 210호			시멘트 스레트지붕 단층	45.75	45.75	87,000	3,980,250	700,000 *5/40 관찰감가
2-1	"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41.36	41.36	87,000	3,598,320	700,000 *5/40 관찰감가
	[종물및부합물]						* 건물 중 지상에 이런 상황	일부는 소재하는 을 참작하여	타인 소유 것으로 보여 평가함.
ㄱ	동소	위치상	화장실 및 창고 등	블록조 슬래브지붕	7.6	7.6	일괄	450,000	
ㄴ	동소	상동	주택 방	블록조 슬래브지붕	5.6	5.6	일괄	410,000	기호ㄱ의 2층에 소재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ㄷ	동소	상동	부엌 및 보일러실 등	판넬조 판넬지붕	7.7	7.7	일괄	300,000	기호ㄱ의 2층에 소재
ㄹ	동소	상동	현관 등	샤시조 샤시지붕	7.9	7.9	일괄	200,000	
ㄴ	동소	상동	세탁실 등	블록조 판넬지붕	6.6	6.6	일괄	300,000	
ㄷ	동소	상동	주방, 창고 보일러실 등	블록조 판넬지붕	10.2	10.2	일괄	450,000	
ㄹ	동소	상동	주방 등	판넬조 판넬지붕	8	8	일괄	350,000	
ㅇ	동소	상동	출입구 등	판넬조 판넬지붕	1.7	1.7	일괄	70,000	
ㅈ	동소	상동	주택 방	블록조 슬래브지붕	11.9	11.9	일괄	900,000	
ㅊ	동소	상동	주방 등	판넬조 슬래브지붕	4.1	4.1	일괄	110,000	
ㅋ	동소	상동	보일러실 등	판넬조 판넬지붕	4.5	4.5	일괄	200,000	기호ㄷ의 2층에 소재
합 계								₩124,062,57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후문에서 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50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의뢰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 방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내 최근 매매사례 중 대상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감정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2) 건물의 평가

본건 건물에 대한 평가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선 및 보수 등으로 인해 실제경과년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주된 방법 외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시산가격에 의한 감정가격의 합리성 검토는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1) 조사기간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2025년 04월 29, 30일에 시행하여 평가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인 2025년 04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5. 기타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등에 대한 의견

본건은 현재 대부분이 공가상태 이고, 기호2 건물에 고령자 1세대(1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2, 제시외 물건 등에 대한 평가의견

지적 및 건물개항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록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창고용도 등 제시외 건물(기호 ㄱ-ㄴ)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시공상태`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사오니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고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3, 감가수정 등에 대한 의견

기호2, 2-1 건물은 1954.0.0.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공부를 기준하면 약 71년 경과 된 건물이나, 감가수정은 장래 경제적 잔존연수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하였음.

4, 지적경계 등에 관한 의견

위성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출입도로로 제공되고 있고, 또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고, 기호2, 2-1 건물 중 일부는 타인 소유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의 면적, 타인 소유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부분의 면적 등은 반드시 측량감정이 요망되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진주시 칠암동 106-3	대	136	단독	2종일 주	세로 (불)	사다리 평지 북향	561,500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등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아래 비교표준지 중 A가 특성이 유사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 공시지가 (원/㎡)	비고
A	진주시 칠암동 112-10	100	대	단독	2종일 주	세로 (불)	사다리 평지 남향	572,9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자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한 용도지역의 자가변동률을 적용함.

구 분	시점수정치	자가변동률
진주시 (25.01.01~25.04.30) (주거)	경상남도 진주시 (25.01.01~25.04.30) (주거) 2025.01.01 ~ 2025.03.31 : 0.124 2025.03.01 ~ 2025.03.31 : 0.036 $(1 + 0.00124) * (1 + 0.00036 * 30/31)$ ≈ 1.00159	0.159 % 상승
※2025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는 자가변동률이 고시되었으나, 그 이후는 현재 미 고시되어 그 추이가 03월 변동률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일수로 안분하여 추산한 것임.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 시 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1)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0	100	1.00	0.85	1.00	1.00	0.850
비교 내용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접면도로 등으로 인한 획지조건에서 본건이 열세한 편임.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와 대법원판례(2007.7.12.선고2006두 11507, 2004.5.14선고 2003다38207 등)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99.6.21.토관 58342-471, 1999.5.20 기획 0100-725)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평가선례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기준시점	구분	토지단가 (원/m ²)	비고
①	진주시 칠암동 10*-*	대	2종일주	2022-10-21	시가참 고	1,791,000	-
②	" 8*-*	대	"	2024-11-07	법원경 매	2,750,000	-
③	진주시 주약동 6*-*	대	"	2025-3-25	담보	1,230,000	A의 비교 인근선례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등

3) 본건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구분	지가수준
인근 유사 토지	2종일주지역 내 유사한 대지의 경우 @700,000-900,000원/m ² 수준 내외로 탐문조사 되고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선례 ③을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	---

※ 비교표준지 A와 선례 ③과의 비교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1,230,000	1.00043	1.000	0.800	984,423	≈1.733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567,200	1.00159	-	-	568,101		
비교요인	시점수정	경상남도 진주시 (25.03.25~25.04.30) (주거) ≈ 1.00043 산정식 기재 생략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0.80	1.00	1.00	1.00	0.800
	비교표준지는 비교선례와 비교 시 위치 등으로 인한 주거의 쾌적성 등 환경조건에서 열세한 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건과 비교 가능한 인근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의 평가선례, 거래사례, 지가수준, 본건과 비교인근선례의 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 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보정치 결정
표준지 A	1.733	1.700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 련 번 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비고
	기 호	공시지가 (원/m ²)							
1	A	572,900	1.00159	1.000	0.850	1.700	829,156	829,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물적,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인근에 소재하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아래 사례 중 'a'가 타사례보다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m ²)	지목	용도지역	거래가액 토지단가 (원/m ²)	거래시점	비고
a	진주시 칠암동 11*~**	12	대	2종일 주	9,900,000 [825,000]	2025-01-14	비교 거래사례 토지만 거래
b	" 48*~*	115.9	대	"	108,000,000 [931,837]	2023-08-04	"
본건	" 106-3	136	대	"	토지+건물 ₩99,800,000	2021-05-05	건물포함
c	" 21*~**	118	대	"	118,000,000 [1,000,000]	2024-01-23	건물포함 [건물가치 무]

상기 기호c 거래사례는 1973-06-29사용승인은 득한 블록구조 단층건 단독주택 건물 50.91m²가 포함되어 거래된 사례로 건물은 노후화되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만의 가치로 거래된 것으로 분석됨

* 출처: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적절한 시세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 보정은 없음.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구 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진주시 (25.01.14~25.04.30) (주거)	경상남도 진주시 (25.01.14~25.04.30) (주거) 2025.01.01 ~ 2025.01.31 : 0.049 2025.02.01 ~ 2025.02.28 : 0.039 2025.03.01 ~ 2025.03.31 : 0.036 $(1 + 0.00049 * 18/31) * (1 + 0.00039) * (1 + 0.00036) * (1 + 0.00036 * 30/31)$ ≈ 1.00138	0.138 % 상승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거래사례는 상호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시 됨.
(1.000)

- (5)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0	0.85	1.00	1.20	100	1.00	1.020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 시 상호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등에서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 규모·형상 등 획지조건에서 우세한 편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우세한 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비고
	기호	단가 (원/m ²)							
1	a	825,000	1.000	1.00138	1.000	1.020	842,661	843,000	-

4. 토지 단가의 결정

(1) 토지 단가 검토

일련 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m 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m ²)	비고
1	829,000	843,000	-

(2) 토지 단가의 검토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비교 시 그 차액이 미미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토지단가를 결정하였음.

(3) 토지 단가의 결정

일련번호	토지 단가(원/m ²)	비고
1	829,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건물평가액의 산출근거

1. 건물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용도	층별	면적(m ²)		사용승인일
					공부	사정	
2	진주시 칠암동 106-3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단층	45.75	좌동	1954.0.0.
2-1	"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단층	41.36	좌동	1954.0.0.
비고	2011.10.7.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건축면적:'0' -> '87.11',용적율 산정용 연면적:'0' -> '87.11')) 직권변경						

2. 재조달원가의 결정

(1) 표준단가 수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²)	내용년수
01-01-04-09	일반주택	블록조/평지붕	4	1,115,000	40 [35-45]
			5	977,000	

* 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4년 건물신축단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1)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주거용 건물 ;

2025-02월 129.87

2024-01월 128.93

$129.87 / 128.93 = 1.0072$ [약0.72 % 상승]

비주거용 건물 ;

2025-02월 130.46

2024-01월 129.52

$130.46 / 129.52 = 1.0072$ [약0.72 % 상승]

* 2025년 02월 지수는 잠정치수로 산정하였음.

(2)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의 결정

대상건물의 규모, 구조, 사용자재 및 시공상태 등을 기준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24년도 건물신축단가표상의 표준단가,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종합 참작하여 비교하여보면,

기호2는 '분류기호 01-01-04-09' 일반주택 5급보다 다소 열세한 건물로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하여 @700,000원/m²으로 재조달원가를 적용하여 감가수정하여 평가하였음.

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의 결정

일련번호	층별구분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m ²)	내용연수	경과연수	잔존연수	잔존가치율 ¹⁾	적용단가 (원/m ²)
2	단층	주택	700,000	40	71	5	5/40	87,000
2-1	단층	"	700,000	40	71	5	5/40	87,000
비고		1) 잔존가치율 = 잔존연수 / 내용연수 2) 기호 2 건물은 1954.0.0.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공부를 기준하면 약 71년 경과 된 건물이나, 장래 경제적잔존연수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로 감가수정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및 결정의견

1. 결정의견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사항, 부근 동유형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사례, 인근선례, 본건전례, 건물의 구조`규격`면적`시공상태 및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12,744,000	-
건물	7,578,570	-
제시외 건물	3,740,000	-
합 계	₩124,062,570.-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후문에서 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5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대학캠퍼스 후면 주택지로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관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접면토지`도로 등과 대체로 등고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폭 약1-2 미터 내외의 출입로와 접하며, 북측 일부분이 인접토지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칠암동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1 -04-20)(경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속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항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록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창고용도 등 제시외 건물(기호 ㄱ-ㄴ)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 시공상태`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위성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출입도로로 제공되고 있고, 또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

기호 2 건물은 1954.0.0..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공부를 기준하면 약 71년 경과 된 시멘트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은 벽지 등, 바닥은 장판지 등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호에 유리끼우기 등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

(3)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갖추고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요망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임대관계 등

대부분이 공가상태 이고, 기호2 건물에 고령자 1세대(1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음.

2. 타인소유 토지상 소재 등

지적도 중 `위성사진 참고용` 도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정확한 건물의 소재 위치 등은 측량감정이 요망되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06-3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06-3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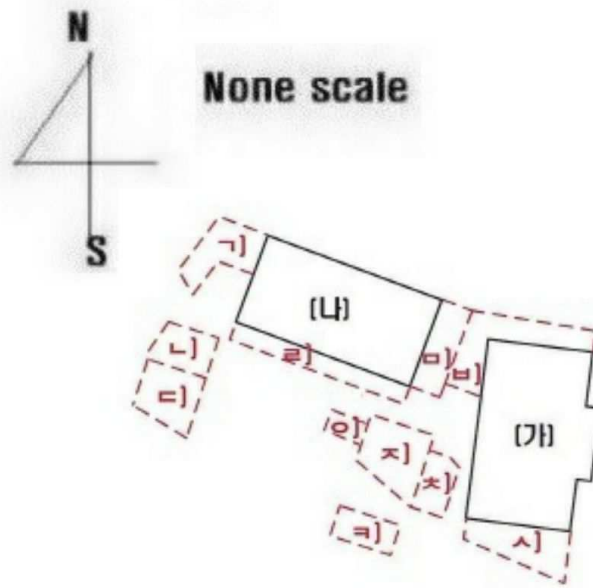
None scale



위성지도 [참고용]



건물 개황도



건물 면적 산출

기호2 : 45.45 m² [공부 45.75 m²]

기호2-1 : 38.72 m² [공부 41.36 m²]

제시외 건물

기호ㄱ : 블록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창고 등] 약7.6 m²

기호ㄴ : 블록조 슬래브지붕 [주택 방] 약5.6 m²

(기호ㄱ의 2층에 소재)

기호ㄷ : 판넬조 판넬지붕 [부엌 및 보일러실 등] 약7.7 m²

(기호ㄱ의 2층에 소재)

기호ㄹ : 사시조 사시지붕 [현관 등] 약7.9 m²

기호ㅁ : 블록조 판넬지붕 [세탁실 등] 약6.6 m²

기호ㅂ : 블록조 판넬지붕 [주방, 창고, 보일러실 등] 약10.2 m²

기호ㅅ : 판넬조 판넬지붕 [주방 등] 약8 m²

기호ㅇ : 판넬조 판넬지붕 [출입구 등] 약1.7 m²

기호ㅈ : 블록조 슬래브지붕 [주택 방] 약11.9 m²

기호ㅊ : 판넬조 슬래브지붕 [주방 등] 약4.1 m²

기호ㅋ :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등] 약4.5 m²

(기호ㅈ의 2층에 소재)

사 진 용 지



본건의 전경



본건의 전경
서측에서 동측을 향하여 촬영

사 진 용 지



기호2 건물의 전경



기호2-1 건물의 전경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기호 7
북측부분을 중심으로 촬영



제시외 건물
기호 7
남측부분을 중심으로 촬영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기호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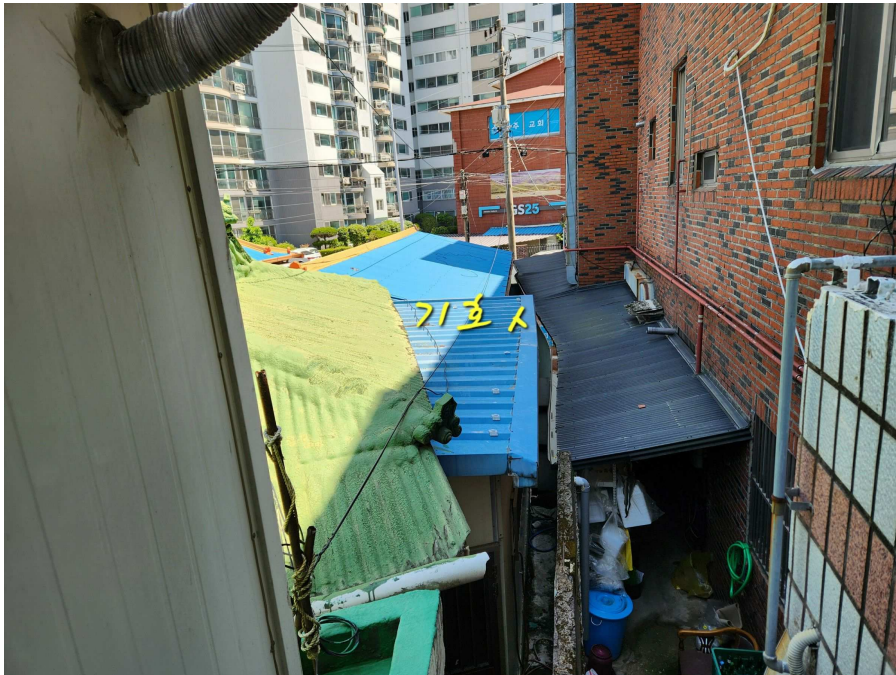


제시외 건물
기호ㄴ, ㄷ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기호르, 모, 비



제시외 건물
기호스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기호 0



제시외 건물
기호 2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기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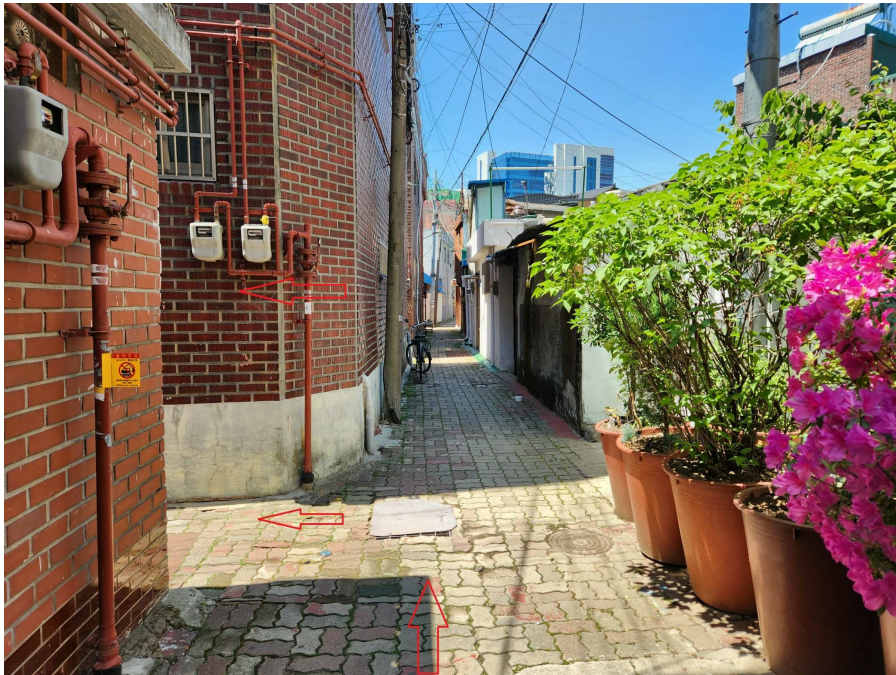


제시외 건물
기호 3

사 진 용 지



출입구, 출입로
부근의 상황 등
북측에서 남측을 향하여 촬영



접근도로 및 부근의 상황 등